

의안번호	2220205
의 퇴 인	서삼석의원
회 답 일	2026.8.13.
추계번호	26B3805

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7조의6 (공공동물병원의 지정 등)	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특별시장·통합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동물진료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·인력 및 장비를 갖추었거나 갖추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동물병원 중에서 공공동물병원을 지정할 수 있다. (제1항)	재량규정
		1. 「동물보호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유실·유기동물의 진료(건강진단 및 예방접종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지원 2. 「동물보호법」 제2조제6호에 따른 봉사동물의 진료 지원 3.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진료 지원	
		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공공동물병원의 시설·장비 확충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 (제3항)	의무규정
2	안 제17조의8 (공익형 수가제)	제1항에 따른 공공동물병원 지정의 기준,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.(제4항)	재량규정
		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이 사용하는 반려동물의 진료비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공익적 목적의 동물 진료행위에 대한 수가(이하“공익형 수가제”라 한다)를 정할 수 있다.(제1항)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공익형 수가제를 적용하여 동물을 진료한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(제2항)	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미 실시 및 미첨부 근거 규정)
1	안 제17조의6 (공공동물병원의 지정 등)	×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17조의8 (공익형 수가제)		

2. 상세 사유

□ 공공동물병원의 지정(안 제17조의 6)

- 개정안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가 유실·유기동물 등의 진료를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는 공공동물병원을 지정하고, 공공동물병원의 시설·장비 확충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경우,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다만,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향후 지정되는 공공동물병원의 개소 수 및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의 규모·종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, 개정안에서는 해당 사항들을 농림축산식품부령에 위임하고 있어 현시점에서는 개정안 시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
- 참고로,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현행법 제35조¹⁾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총 277개소의 동물보호센터가 설치·운영 중이며, 이 중 상당수는 동물병원 등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운영되고 있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동물보호센터의 설치·운영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고 있음

-
- 1) 제35조(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등) ① 시·도지사와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34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·보호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 기준에 맞는 동물보호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- ② 시·도지사와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설치·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한 동물보호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제34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·보호조치
 2. 제41조에 따른 동물의 반환 등
 3. 제44조에 따른 사육포기 동물의 인수 등
 4. 제45조에 따른 동물의 기증·분양
 5. 제46조에 따른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등
 6. 반려동물사육에 대한 교육
 7. 유실·유기동물 발생 예방 교육
 8. 동물학대행위 근절을 위한 동물보호 홍보
 9. 그 밖에 동물의 구조·보호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무
-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설치·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의 설치·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- ⑤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동물보호센터의 장 및 그 종사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동물의 보호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.
- ⑥ 동물보호센터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동물보호센터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구성·운영하여야 한다. 다만, 시·도 또는 시·군·구에 운영위원회와 성격 및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해당 시·도 또는 시·군·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.
- ⑦ 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준수사항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고,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
- 농림축산식품부는 「반려동물 인프라 구축」 사업을 통해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소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고 있으며 해당 예산은 2026년 기준 30억 5,000만원임. 또한 「유기·유실동물 관리강화」 사업을 통해 유기동물의 구조 및 입양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해당 예산은 12억 6,000만원임
- 참고로, 2026년 기준 현행법 제34조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및 운영 현황은 [표 1]과 같음

[표 1] 동물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 현황

(단위: 천원)

지역	개소 수	운영비(2025년 결산 기준)					
		인건비	일반 운영비	의료비	사료비	기타 관리비	구조비
서울	43 (위탁:40,직영:3)	240,256	274,555	1,372	97,470	250,263	195,866
경기	34 (위탁:22,직영:12)	236,968	195,822	36,399	66,078	146,577	136,494
인천	20 (위탁:20)	—	—	10,802	—	6,753	—
부산	16 (위탁:16)	145,759	73,431	11,604	4,671	18,740	25,224
울산	11 (위탁:11)	26,030	2,358	3,159	4,826	2,638	91
경남	18 (위탁:6, 직영:12)	157,851	40,344	55,660	22,271	43,637	15,097
경북	22 (위탁:9, 직영:13)	1,621,984	103,258	1,470,022	1,814,958	157,419	2,053,562
대구	24 (위탁:24)	16,176	4,944	4,094	1,984	331	1,660
대전	1 (직영)	911,297	81,319	62,319	62,980	3,838	—
세종	1 (위탁)	—	112,783	89,336	—	—	233,300
충남	15 (위탁:6, 직영:9)	84,873	63,185	23,022	13,048	6,746	38,275
충북	4 (직영:4)	102,712	30,640	20,454	10,365	29,871	18,106
강원	19 (위탁:6, 직영:13)	87,471	17,631	17,949	11,189	3,986	10,035
전북	23 (위탁:17, 직영:6)	75,689	31,953	30,640	22,897	8,743	8,868
전남	23 (위탁:9, 직영:14)	48,279	31,803	10,962	8,071	7,196	17,000
광주	1 (직영)	350,488	145,957	52,210	66,300	56,460	50,903
제주	2 (직영:2)	138,271	161,612	71,830	27,484	12,770	—

주 1) 운영비는 각 광역자치단체 소재 동물보호센터의 인건비, 의료비, 사료비 등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음

2) 인천광역시 소재 9개 동물보호센터는 2025년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았음

자료: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

□ 공익형 수가제(안 제17조의 8)

- 개정안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공익적 목적의 동물 진료행위에 대한 수가를 정하고,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형 수가제를 적용하여 동물을 진료한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다만,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공익형 수가의 규모·단가 및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진료 횟수·비용, 지원 대상 및 범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, 현시점에서는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개정안 시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

-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Ⅲ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장우윤	예승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장우윤	02-6788-3735	jangwy93@assembly.go.kr